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

#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8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8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  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재주 의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·조사·연구하고, 체계적인 수집·보존 활동을 통해 향토 자료의 학술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,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-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향토사 연구자료 수집 방법 및 교육·홍보를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#### 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물, 지리,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향토사로 정의하고,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는 “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”과 관련하여 “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”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고,
 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,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【참고】

- 2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  - ▶ 「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」(2022. 12. 29. 제정)
  - ▶ 「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24. 4. 5. 제정)

#### 나. 주요 조문의 검토

- ‘안 제2조’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, “향토사”와 “향토지”에 관하여 규정함.
- 제1호는 “향토사”를 충청북도의 인물, 지리, 문화유산 등 지역고유의 역사“로 정의하고 있고, 제2호는 “향토지”를 “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, 민속 등을 조사·연구하여 기록한 책“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,
- 지리, 문화 등의 단어가 중복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을 고려하여, “향토지“의 정의를 “지역고유의 역사, 지리, 문화 및 민속 등을 조사·연구하여 기록한 책“으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향토사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,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향토사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인물, 지리,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.
2. “향토지”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, 민속 등을 조사·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향토 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)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·보존
2. 향토지 발간·배포 및 홍보
3.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

4.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자료수집)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,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, 사본 수집,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,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) 도지사는 효율적인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 내 시·군, 향토사학자, 역사·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